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· 핵심 확인사항

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건축물 높이·연면적·용도, 교량·터널·댐 여부와 굴착 깊이 등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.

전체 시설 용도·제외 범위는 원문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높이·면적의 산정자료, 신축·개조·해체 범위 및 공법을 확보해 관할 심사 절차와 대조하세요.

일부 공정이 대상이어도 전체 현장의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· 핵심 확인사항

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건축물 높이·연면적·용도, 교량·터널·댐 여부와 굴착 깊이 등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.

전체 시설 용도·제외 범위는 원문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높이·면적의 산정자료, 신축·개조·해체 범위 및 공법을 확보해 관할 심사 절차와 대조하세요. 일부 공정이 대상이어도 전체 현장의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· 핵심 확인사항

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건축물 높이·연면적·용도, 교량·터널·댐 여부와 굴착 깊이 등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.

전체 시설 용도·제외 범위는 원문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높이·면적의 산정자료, 신축·개조·해체 범위 및 공법을 확보해 관할 심사 절차와 대조하세요. 일부 공정이 대상이어도 전체 현장의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









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 · 핵심 확인사항

공사금액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 건축물 높이·연면적·용도, 교량·터널·댐 여부와 굴착 깊이 등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.

전체 시설 용도·제외 범위는 원문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높이·면적의 산정자료, 신축·개조·해체 범위 및 공법을 확보해 관할 심사 절차와 대조하세요.

일부 공정이 대상이어도 전체 현장의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그림은 이해를 돕는 설명 예시입니다. 전체 대상·예외·절차·근거는 연결된 본문과 공식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
안전한플랜 · 만화 제작 2026.10.30. · 기관 주소·철골 데이터 개별 대조일은 본문 표시

건설안전 실무만화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공식 근거 원문 · 발췌 범위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

국가법령정보센터 · 확인 2026.10.30. · 해설과 구분하여 수록

제42조(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)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 · 개조 또는 해체(이하 “건설등”이라 한다) 공사

가.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
나.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
다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1)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 · 식물원은 제외한다)

2)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

3) 종교시설

4)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

5)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
6) 지하도상가

7) 냉동 · 냉장 창고시설

2.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·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
3. 최대 지간(支間)길이(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)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

4. 터널의 건설등 공사

5.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

6.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
공식 원문 열기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

https://law.go.kr/lsLinkCommonInfo.do?chrClsCd=010202&lsJoLnkSeq=1024053123

표시한 조문·항의 문구를 수록했습니다. 관련 법령 전체와 최신 변경사항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.